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 소 (대표자)				
	요양기관 소재지				
신 청 내 용	신청구분	☐ 3월 선지급		☐ 4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선지급(3개월분)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4월 선지급은 4월 중 지급되며, 5월 선지급은 5월 중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 등록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SMS 통지	☐ 신청인 HP: ☐ 거절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단독개설자]

[전체 의료기관용]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3 월 23 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① 홍길동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김천사 외과의원	
	주민등록 번호	601231-1234567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주 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0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신 청 내 용	신청구분 ②	☒ 3월 선지급		☒ 4월 선지급	☒ 5월 선지급	
	신청금액 ③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선지급(3개월분)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4월 선지급은 4월 중 지급되며, 5월 선지급은 5월 중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 등록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SMS 통지	☒ 신청인 HP : 010-4321-8765 ☐ 거절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제출 전 점검사항

- ①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일치되어야 함
- ② 신청구분 체크여부 확인
- ③ 신청금액(백만원이하 절사) : 금액확인(지급가능금액 초과 신청 불가) ... 자필로 작성

[공동개설기관-대표자]

[전체 의료기관용]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3 월 23 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① 홍길동 (인감날인)		요양기관명	김천사 외과의원	
	주민등록 번호	601231-1234567	사업자등록 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87654321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주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0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신청내용	신청구분 ②	☒ 3월 선지급		☒ 4월 선지급		☒ 5월 선지급
	신청금액 ③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금 123,000,000원 (금 일억이천삼백만원)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선지급(3개월분)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4월 선지급은 4월 중 지급되며, 5월 선지급은 5월 중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 등록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SMS 통지	☒ 신청인 HP : 010-4321-8765 ☐ 거절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공동개설기관-대표자 외 공동개설자]

(견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개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2020년 3 월 23 일

다음과 같이 선지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별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오니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4] 김철수 (인감도장)		요양기관명	김천사 외과의원	
	주민등록번호	601231-1234567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033-1234-5678	Fax	033-1234-5679	E-mail	
	주소 (대표자)	강원도 ○○시 ○○로 ○○, 101-203(○○동, ○○아파트)				
	요양기관 소재지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신청내용	[5] 신청구분	☐ 3월 선지급		☐ 4월 선지급		☐ 5월 선지급
	신청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처리기간	◇ 신청·접수 후 7영업일 이내 지급 ⇒ 다만, 처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월, 4월, 5월 선지급(3개월분) 동시 신청 가능하며, 동시 신청 시 4월 선지급은 4월 중 지급되며, 5월 선지급은 5월 중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입금계좌	공단 등록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SMS 통지	☐ 신청인 HP: ☐ 거절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 제출전 점검사항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일치되어야 함
- 공동개설자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신청인'란에 개설자 개개인 모두 작성
- 신청구분 체크여부 확인
- 신청금액(백만원이하 절사) : 금액확인(지급가능금액 초과 신청 불가) ... 자필로 작성
- 공동개설자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일치되어야 함
- 공동공동개설자는 '신청내용' 작성 불가 ... '신청내용'은 대표자만 작성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과 관련하여 2020.3.19.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한 요양기관(이하“요양기관”이라 한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과 다음과 같이 합의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및 기타 본건 지원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① 공단은 요양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양기관에 선지급하기로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선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율 및 상기 기간의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기준금액은 공단이 확인하여 정한다.

② 공단은 2020년 3월, 4월, 5월(최대 3개월분)중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각 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선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① 제2조에 따라 2020년 3월, 4월, 5월 중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를 거쳐 3월, 4월, 5월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전액 상계하고, 잔액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이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익월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합의체결에 의하여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요양기관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미달하여 위 제1항에 따른 상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공단의 선택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잔존 정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2021년 1월 이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제2항에 따라 잔존하는 정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청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요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유 중의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선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의무는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요양기관은 각호 사유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제3조에 따라 정산이 된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 변제 시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폐업(3개월 이상 업무정지 포함), 의료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업 허가 취소,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이 양도,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진 때
3. 요양기관이 부도, 거래정지처분, 해산,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있는 경우

제5조 (협조)

정부정책에 따라 신청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 (관할법원)

본 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합의의 체결 및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단과 요양기관은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뒤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 .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 :

대표 :

담당자(대리인) : (인감날인)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 : (인감날인)

[단독개설자] (견본)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과 관련하여 2020.3.19.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한 요양기관(이하“요양기관”이라 한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과 다음과 같이 합의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및 기타 본건 지원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 ① 공단은 요양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양기관에 선지급하기로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선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율 및 상기 기간의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기준금액은 공단이 확인하여 정한다.
- ② 공단은 2020년 3월, 4월, 5월(최대 3개월분)중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각 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선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① 제2조에 따라 2020년 3월, 4월, 5월 중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를 거쳐 3월, 4월, 5월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전액 상계하고, 잔액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이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익월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합의체결에 의하여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② 요양기관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미달하여 위 제1항에 따른 상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공단의 선택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잔존 정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2021년 1월 이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앞 장 뒷 면 -



← 대표자 개인 인감 간인

제5조 (협조)

정부정책에 따라 신청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 (관할법원)

본 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합의의 체결 및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단과 요양기관은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뒤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3. 23.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 :

대표 :

담당자(대리인) : (인감날인)

← 공단 인감 날인 및
기재할 예정이니
작성하지 마세요

“요양기관”

명칭 : 김천사 외과의원

주소 : 강원도 ○○시 ○○로 ○○, ○○초(○○동, ○○빌딩)

대표 : 대표이사 홍길동



← 대표자 개인 인감

[공동개설기관] (견본)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합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과 관련하여 2020.3.19.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 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한 요양기관(이하“요양기관”이라 한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과 다음과 같이 합의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확대 시행 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여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및 기타 본건 지원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 ① 공단은 요양기관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의 최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양기관에 선지급하기로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월수로 평균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선지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며, 선지급율 및 상기 기간의 금원이 없는 요양기관의 기준금액은 공단이 확인하여 정한다.
- ② 공단은 2020년 3월, 4월, 5월(최대 3개월분)중 요양기관이 선지급 신청한 각 1개월분 금액을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선지급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 ① 제2조에 따라 2020년 3월, 4월, 5월 중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은 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를 거쳐 3월, 4월, 5월에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전액 상계하고, 잔액은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분할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분할상계액이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익월에 포함하여 상계하기로 한다. 공단의 상계 시 본 합의체결에 의하여 미리 상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② 요양기관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미달하여 위 제1항에 따른 상계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정산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공단의 선택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잔존 정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2021년 1월 이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앞 장 뒷 면 -

철 김 수
인

길 홍 동
인

↳ 대표자 개인 인감
공동개설자 개인 인감
각각 간인

제5조 (협조)

정부정책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6조 (관할법원)

본 합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합의의 체결 및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단과 요양기관은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뒤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0. 3. 23.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 :

대표 :

담당자(대리인) : (인감날인)

↳ 공단 인감 날인 및
기재할 예정이니
작성하지 마세요

“요양기관”

명칭 : 김천사 외과의원

주소 : 강원도 ○○시 ○○로 ○○, ○○호(○동, ○○빌딩)

대표 : 대표이사 홍 길 동

김 철 수

길 홍 동
인
철 김 수
인

↳ 대표자 개인 인감 및
공동개설자 개인 인감